

예 산 총 칙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69,425,830	29,082,775
일반회계	854,818,795	25,644,564
특별회계	114,607,035	3,438,211
공기업특별회계	93,733,631	2,812,00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0,829,353	1,524,881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353,800	40,61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1,550,478	1,246,514
기타특별회계	20,873,404	626,202
주택사업특별회계	71,234	2,137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3,645,338	109,36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5,096,600	152,898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652,731	109,582
수질개선특별회계	6,698,000	200,940
기반시설특별회계	532,413	15,972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116,000	33,480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61,088	1,833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안)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안)"과 같다.

제 3 조 2011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0,000백만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314,322천원으로 한다.